
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

I 개요

□ 근거

-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(등록금의 반환)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제27조(학년도·학기), 제70조(등록금의 반환)

□ 반환대상자

1. 학부생

- 등록금 중복납부자, 입학허가 취소자, 입학 포기자
 -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
 -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(2011년 제적자부터 적용)
 -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
 - 기타 반환사유*가 발생한 자
- * 졸업유보 중 수강포기한 경우,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되었던 경우,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편입한 경우, 차등등록금 유보자가 수강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 등

2. 시간제 등록생

- 등록 포기자, 등록 허가 취소자, 중복납부자, 자퇴자

□ 반환대상 경비

- 수업료
 - ※ 등록금만 반환(교재대금 및 학보대금은 출판문화원에서 반환)
 - ※ 실습비(사회복지연계전공자로 「사회복지 현장실습」 수강생) 반환계획은 별도 수립

Ⅱ 반환기준

□ 대상자별 반환기준

대 상 자	수업료	반 환 기 준
중복납부자, 입학허가취소자, 입학포기자	○	전액 반환
자퇴자, 졸업자, 제적자 등	○	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

*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(휴학 없음)

□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

(2021.1학기 기준)

반 환 사 유 발 생 일	기 간	반 환 금 액(원)	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	3월 2일까지	수업료 전액	· 계열 I : 343,800 · 계열 II : 365,800 · 계열 III : 378,800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3월3일 ~ 3월30일	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	· 계열 I : 286,490 · 계열 II : 304,830 · 계열 III : 315,660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	3월31일 ~ 4월29일	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	· 계열 I : 229,190 · 계열 II : 243,860 · 계열 III : 252,520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	4월30일 ~ 5월31일	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	· 계열 I : 171,900 · 계열 II : 182,900 · 계열 III : 189,400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	6월 1일 이후	반환하지 아니함	없음

※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

- 2021.2.28.이 일요일임에 따라 3. 2.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 반환
- 2021.5.29.이 토요일임에 따라 5. 31.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 반환

※ 계열구분

- 계열 I : 국문, 영문, 중문, 프랑스언어문화, 일본, 법, 행정, 경제, 경영, 무역, 관광, 문화교양
- 계열 II : 농, 생활과학, 컴퓨터과학, 통계·데이터, 보건환경, 간호, 유아교육, 교육, 청소년교육, 미디어영상
- 계열 III : 사회복지, 생활체육지도

※ 「등록금 차등납부자」 및 「시간제등록생」 반환기준 : <붙임 1, 2> 참고

※ 「등록금 반액 감면자」 반환기준 : <붙임 3> 참고

□ 반환기준일

○ 자퇴자.제적자

- 해당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: 자퇴일
- 휴학 중 자퇴한 자: 휴학일
 - ※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,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
-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: 휴학일 또는 자퇴일
 - ※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,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을 적용
 - ※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(휴학 없음)
- 제적자(2011년 제적자부터): 휴학일
 - ※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,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

○ 졸업소요학점 취득자

- 졸업유보자(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)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: 수강포기원 제출일
- 휴학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: 휴학일

○ 기타

-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: 휴학일
- 사망자: 사망일
- 해당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: 휴학일

Ⅲ 반환신청방법

① 자퇴자

1.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(홈페이지에서 바로 자퇴신청)

- 공인인증서(전자거래 범용, 보험 또는 은행용) 등록

* 경로 : 학교홈페이지(로그인) - 맞춤정보 - 개인정보관리 - 인증서등록

- 자퇴 신청 및 반환계좌(반드시 학생본인계좌)입력

* 경로 : 학교홈페이지(로그인) - 맞춤정보 - 나의정보 - 종합신청정보- 학적 - 자퇴신청

2.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(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)

- 지역대학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(우편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)

- 구비서류 : 자퇴원, 등록금반환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

3. 예외사항 : 해당학기 등록 후 학기시작 전인 2월에 바로 자퇴하는 재학생의 경우

- 홈페이지에서 자퇴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 내역이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자퇴신청과는 별도로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 후 지역대학에 제출

② 제적자(2011년 제적자부터 반환 가능)

- 2011년 제적생: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신청

- 2012년 이후 제적생

- 「홈페이지(로그인)-맞춤정보-나의정보-종합신청정보-등록금반환신청」메뉴에서 “신청전”목록 선택 후,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

③ 졸업소요학점 취득자

- 「홈페이지(로그인)-맞춤정보-나의정보-종합신청정보-등록금반환신청」메뉴에서 “신청전” 목록 선택 후,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

④ 복학생 등록금 차등반환자

- 대상: 2021. 1학기에 유보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 중, 등록금 차등 납부 대상자로서, 휴학당시 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 한 경우
- 반환신청기간: **4월 30일(금) 부터**
- 신청방법 : 「홈페이지(로그인)-맞춤정보-나의정보-종합신청정보-등록금반환 신청」메뉴에서 “신청전” 목록 선택 후, 반환 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

⑤ 기타 반환신청자

- 입학포기자 :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
- 중복등록자 :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과 함께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에 제출

IV 반환결과 확인

-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 처리 됨
- 반환완료 후 등록금반환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알림
 - *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문자메시지 거부설정되어 있거나, 통신사 상황에 따라 송신되지 않을 수 있음
- 반환처리 결과 확인
 - 학교홈페이지(로그인)-맞춤정보-나의정보-종합신청정보-등록금반환신청

붙임자료

1. 반환기준표 1부.
2. 「등록금반환신청서」 (서식)